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달하는

정책 제안문



좋은정책 경기연대

531 좋은정책 경기연대 출범 선언문

다가오는 5월 31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날이다.

지방자치 10여년! 풀뿌리 민주주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지 못한 채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등 지방정치와 행정의 낙후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의 양극화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문화 또한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실시된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방자치가 시민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반응하고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 속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역에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런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면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아닌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감정 선동과, 지역개발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 토호나 소수 기득권층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두움을 힘차게 몰아내고 진전된 의미로서의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되는 장으로서 선거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개발공약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 간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 및 제안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고용, 교육, 노인, 여성, 교통, 복지, 주택, 환경,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

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할 것이다.

하나,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것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살펴보고 실천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산조달에서부터 집행계획까지의 이행가능성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후보간 변별력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후보들의 반 자치적, 반환경적, 반문화적 헛 공약을 감시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정책이 제시되고 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선거 후 당선자가 재임기간동안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모니터하여 “책임지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다.

531 좋은정책 경기연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주인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갈망하던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가 정치꾼들의 선전장이 아닌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 하는 대동의 잔치가 되기를 바란다.

지연, 학연, 혈연, 금(金)연 몰아내고 정책선거 정착하자!

헛공약을 몰아내고 책임정치 구현하자!

유권자의 권리증진 531지방선거가 시작이다!!

유권자의 힘으로 정책선거 만들어 내자!

2006년 4월 5일

531 좋은정책 경기연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여성연대 •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경기시민사회포럼 • 흥사단 경기도협의회
- YMCA경기도 협의회 • 녹색자치 경기연대 • 경제실천시민연합경기지부

목 차

I. 정책 제안 추진 배경 및 개요

II. 도민참여 정책 7대 공약안

1.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2.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
3. 의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4. 위원회의 위원선정 규정 마련과 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5. 정보공개 제도 도입 및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6. 감사관실 독립성 강화 및 시민감사관 참여와 기획기능 확대
7. 지역갈등해결, 주민권리증대로서의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시민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III. 경기지역정책 29대 공약안

환경, 교통, 여성, 교육, 복지, 언론, 통일 등..

I . 정책 제안 배경 및 추진개요

531 경기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제안하며

올해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재도입후 4번째 맞이하는 도민참여의 장입니다. 이번 선거를 참다운 경기도의 일꾼을 뽑고, 도민 및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5.31 좋은정책 경기연대”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경기좋은정책을 공약안으로 제안합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까지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정책선거로 정착되고,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계획서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은 이를 비교, 평가하여 투표에서의 선택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수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쳐 36개의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31좋은정책 경기연대”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경기연대는 정책위원회를 구성, 도민참여를 위한 정책공약안과 경기지역 현안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책 공약안을 생산하였고 지난 4월 25일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정책 공약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도민참여정책공약안으로 7개의 의제를, 지역정책공약안으로 29개의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5.31좋은정책 경기연대는 우리가 제시하는 37개의 정책공약안을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민들과 상호 교류 및 호흡하는 구체적인 공약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희망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후보들이 공약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당선 후에도 자발적 공약이행평가 및 검증을 통해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6년 4월 27일

531 좋은정책 경기연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여성연대 •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경기시민사회포럼 • 흥사단 경기도협의회
- YMCA경기도 협의회 • 녹색자치 경기연대 • 경제실천시민연합경기지부

Ⅱ. 도민참여 정책 7대 공약안

정책공약안 1	“경기도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

1. 제안배경

- 시민참여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조건임.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자치분야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
- 시민참여는 지자체로부터 시민에게 분권을 진행시키는 준비이며, 이를 위해 정책 형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함. 이 조례에는 주민 참여의 보편적 가치와 구체적 실천 수단이 담겨 있어야 하고, 나아가 주민자치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조례가 되어야 함.

2. 현황과 과제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청주시 와 안산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 등을 제정하여 예산편성 등 지방행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 참여예산 및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및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제와 절차 마련

3. 정책 제안

별첨 1 과 같은 조례 제정을 제안

(별첨 1)

경기도주민참여기본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공개)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예산참여시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100인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정학, 경제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순수한 NGO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각 시의 추천을 받은 자
5.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도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

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한 후 즉시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공약안 2	예산편성의 주민분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
-------------------	--

1. 제안배경

-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폐지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음. 이로 인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성 또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처럼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시키고,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2. 현황

-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등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민이 교육 받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질화되어 가면,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인 거버넌스의 실현임.

3. 세부공약

- 별첨 2 과 같은 조례 제정을 제안
(별첨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와 경기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경기도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 3 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4 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예산관련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제 6 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 7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경기도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동별 1인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1. 재정학, 경제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순수한 NGO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각 시의 추천을 받은 자
 5.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 ④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 시의 추천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중에서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제 8 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경기도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도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 9 조 (운영)

- ① 위원회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 ②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경기도에 두되, 필요시 관할 구역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위원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업무 분야별 예산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운영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12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6.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 및 실무지원)

-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회의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예산정책토론회

제20조 (토론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경기도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예산정책토론회는 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한다.

제21조 (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①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사전설명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한다.

③ 분야별 토론회와 총괄토론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 한다.

④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분야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⑤ 총괄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면서, 경기도 전체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대규모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토론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토론한다.

⑥ 도지사는 각 토론회 이전에 토론 준비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의 전 과정은 공개한다.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22조 (구성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9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④ 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통제장치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등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공약안 3	의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	-----------------------------

1. 제안배경

- 의회는 시민의 직접 선거로 마련된 민주주의 장임. 그러나 행정부와의 견제와 협력은 왜곡되어지기 일쑤이고, 전문성과 책임성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지방 의회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2. 현황

-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경됨.
-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의회 사무국과 인사권이 집행부의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상생적인 견제와 협력이 아주 미흡한 상황임.
- 소속 위원회와 개인사업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빈번함.

3. 세부공약

- 직무전념을 위한 겸직금지, 이해상충 회피 등 최소 국회의원 수준에 준하는 윤리 규정 필요
- 도의회 의원에게 정책적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 기능의 역할 강화
현재 전문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사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전문위원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보좌역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전문위원 및 시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의회 근무하는 직원의 직렬을 가칭 「지방의회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전문위원의 의정연구 전문가로서의 역할 강화
전문위원의 활동역량에 따라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다. 도정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부족한 것은 일차적으로 도의원의 자질론도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도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

서 전문위원을 의정연구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정책공약안 4	위원회의 위원선정 규정 마련과 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	---

1. 제안배경

-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수의 참여를 대표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원들 간의 신중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참여적 의사결정제도임.
- 행정관료주의 지양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 확립과 행정의 중립성 및 정책의 안정성·책임성 확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왜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결을 대신하여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합의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주민의 또 하나의 대표 기구이며, 지역정치의 현장임.

2. 현황

-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선정되기도 하며, 지역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기도 함. 그러나 거의 일 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정도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도 많음.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외비를 명분 삼아 공지를 하지 않고 있거나, 법령상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를 금지한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위원회의 구성도 관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운영도 형식적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3. 세부공약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참여통로를 확대해야 함. 관료 위주나 소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공개모집 실시와 민간위원 비율 60% 이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 회의가 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완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만약,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회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공표 되어야 함. (인터넷 공개)
- 위원회 의결사항이 소관부서 정책결정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되고 정책결정자가 이의 반영 여부나 결과를 참여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법적 절차를 의무화하여야 함. 그리고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의 연구, 논의 심의 기능 강화와 분기별 정례화 된 회의 규정이 필요함.

정책공약안 5	정보공개공표 제도 도입 및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	----------------------------------

1. 제안배경

-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주요 쟁점은 주민의 인지도 부족 및 정보공개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행정정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약적 요인을 제거하여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 정보공개는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임.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 과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함.
-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 2004년 1월 공개여부 결정기간 단축(15일->10일) 등 개정
=>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 행정정보공개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대상 및 방식, 시기 등을 구체화할 것

3. 세부공약

- 적극적인 정보공표제도 도입 필요
적극적 정보공표제도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간담회·설명회·공청회 등 관련 자료, 용역보고서, 각종 평가서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시보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열람수수료의 폐지와 공익성이 깊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혜택 도입 필요함.
- 비공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필요
우선 현행법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비공개대상사유를 보다 축소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야 함. 현행법에 의하면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할 우려”, “중대한 이익”,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익” 등과 같은 불확정 법률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필요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신설

정보공개제도의 심의와 불복심의 등 모두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 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홍보, 공무원 교육, 제도 개선, 장보 미공개에 대한 불복심판 전담 등을 관장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함.

정책공약안 6	위원회 등 협치기구의 위원선정규정 마련 및 기능정상화
-------------------	--

1. 제안배경

-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특히 정책 결정사항이나 행정사항들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관료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쳐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현 경기도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인 연구, 논의, 심의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나태한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 등 협치기구는 행정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의 및 조율과 합의의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이미 종이위원회로 전락한 곳이 많으며 실제 1년에 한번 또는 열리지 않는 위원회 또는 열려도 인사와 식사로 일관되는 형식화로 전락해있음
위원회 및 협치기구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3. 세부공약

- 위원회 위원공개모집 실시와 민간위원 비율 60% 이상
- 위원회의 연구, 논의, 심의 기능 강화와 연 6회 이상의 정례회의 규정화
- 모든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공개

정책공약안 7	지역갈등해결, 주민권리증대로서의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

1. 제안배경

- 국민의 권리의식의 성장, 시민사회 참여의 확대, 세계경제와의 동조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급격한 변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정치경제, 사회문화, 행정의 각분야에서 생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익집단의 집단이익표출이 빈번해지고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신속성, 실효성, 개방성 등 기대욕구가 증대하여 행정수요자의 변화요구도 커지고 있음
-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의 확보와 지역민의 권리구제의 자율성과 신속성 요구되어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권리구제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증대하여 제도화된 영역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갈등사안의 해결 및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참여 Governance구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행정에서 행정옴부즈만 기능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유사옴부즈만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아직은 운영이 활발하지 않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은 조례나 내부지침, 감사규칙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제도, 청렴계약옴부즈만, 민원배심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관등 다양하며, 업무 또한 감사청구, 부패감사, 민원조정, 민원상담, 시정 모니터, 민원후견인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의 문제
고충민원에 대한 독자적 처리보다는 행정감시, 상담, 자문 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보다는 중앙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어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은 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지는 것이 필요함.

<표-1> 지방옴부즈만제도 도입현황

구 분	서울시강동구	서울시양천구	경기도안양시	충북청주시	경기도부천시	전북정읍시
명 칭	구민고충 조사위원회	구민고충민원 처리위원회	안양시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청주시민 고충심위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관
설치근거 (공포일)	조례(96. 1. 3)	조례(96. 1.10)	조례(96. 1.23)	조례(96.8.1)	조례(97.4.30)	조례(03.4.30)
구 성	5인합의제	6인합의제	14인합의제	5인독임제	2인독임제	1인 독임제
실 적	17건	6건	115건	2건	78건	81건
보 수	-	-	-	-	4급10호봉	4급1호봉-
임 기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3년 연임가능
지원부서	감사실민원관 리계겸임(4명)	감사실민원관 리계겸임(4명)	시민과생활민원 계겸임(4명)	자치행정과 민원 처리계겸임(4명)	부시장직속옴부즈 만실(3명)	기획감사실
근무형태	비전임(사안 처리시 출석)	비전임(사안처 리시 출석)	비전임(사안처 리시 출석)	비전임(사안처리 시 출석)	격일제(주3일근무)	상근전임
특이사항		*구청장 직소 민원 체제운영 으로운영 중지	*위원장이 시의원 *총무국장이 위원 위촉	*민원실 활성화 로운영성과 미흡	*자문위원 30명 *의회동의 시장위촉 * 직권조사권	*시장추천에 의해 의회동의 언어 위촉 *자문위원9인구성

○ 서울시 강동구, 청주시, 안양시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을 시의원이나 시의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시와 시의회로부터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성확보가 어려우며, 처리업무도 시민의 불편사항처리나 생활민원해소가 주된 업무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3. 세부공약

1)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2005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대한 근거법도 함께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으로서 그동안 활동해 온 시민단체가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도화된 영역안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투명한 행정구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처분에 대해 시와 민원인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민원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상호간 협의로 민원을 해소토록 유도하는 조정·중재를 통한 “갈등해소 기능”을 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지역내 공공갈등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상생의 갈등해소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민원발생건수, 인원, 재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사무국의 인력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의 옴부즈만의 지역사무의 통합기능으로

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 현재 일반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국고위를 비롯하여 특수옴부즈만인 인권위, 청렴위외에 소비자보호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참여정부하에서 군사, 검찰·검찰, 의료분야에 대한 옴부즈만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 이러한 국가단위의 옴부즈만이 시민참여를 넓히기 위해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각 기관에 대한 개별관계를 가질 만큼 민원도 많지 않으며, 각 단체의 활동 여력도 많지 않다.
-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를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으므로, 제도화된 영역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이 필요하다.

Ⅱ. 경기지역정책 29대 공약안

정책공약안 1	경기도의 인구급증 억제하여 복지경기 기초마련
------------	---------------------------------

1. 제안배경

- 2005년 경기도 인구는 1060만으로 20년사이 400만의 인구 급증
- 경기도 인구급증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국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각급학교 1인당 학생 수 전국 1위, 경찰공무원 당 인구 수 전국 1위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급속한 인구증가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 지역의 난개발로 녹지의 훼손과 교통문제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복지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
- 경기도의 인구급증은 사회간접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야기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 의 근거가 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목표를 합산하면 2650만명으로 파악 되어 경기도 인구급증은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2005년 7월 1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심의권이 경기도에 이관되었지만 경기도의 인구급 증 을 막아낼 효과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경기도의 종합 발전계획인 “경기비전 2020”에서는 2020년 경기도의 인구를 2260만으 로 설정하여 전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행수단이 없는 미사여구일 뿐임
- 건교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경기도 개발계획(2020년 까지 경기도에 200만호 신규 주택단지 건설)이 진행된다면 인구급증을 막아낼 수 없음

3. 세부공약

- 31개 시군의 인구급증 도시기본계획을 수도권종합정비계획의 인구목표로 전면 수정 한다.
- 경기도 인구급증을 야기하는 건교부의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막아낸다.
-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개편한다.
- 도비지원과 인구급증을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급증을 억제하고 저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공약안 2	도심녹지를 확충하고 생태축을 복원한다.
-------------------	------------------------------

1. 제안배경

-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로, 환경기초시설, 교육시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난개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그러나 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 시 환경적 검토의 부분은 미흡한 실정인 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는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또한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민간분양을 통해 개발된다면 도심녹지의 확충기회는 사라질 실정이다.
- 관악산, 북한산, 광교산, 청계산 등 경기도의 도심지역 산들은 각종 도로와 택지개발로 생태축이 단절되어 생태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다리(에코브리지) 연결, 도심녹지확충, 자연형하천 복원 등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이 집중되어 녹지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 경기도의 지가상승으로 사유지의 도심녹지 조성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공유지마저 각종 개발계획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수원의 서울농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세부공약

- 각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한다.
- 경기도의 생태현황도(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녹지축을 복원, 확대한다.
-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태면적율 제도를 모든 부문에 확대 실시한다.
- 생태다리(에코브리지) 건설등 생태축 복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정책공약안 3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	------------------------

1. 제안배경

-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런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은 의왕시 메디슨공군기지 기름오염, 팻3n 게리오웬 미군기지 기름오염, 평택미군기지 기름유출,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현재 미군공여지 반환과정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5천억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미군의 원상회복 여부가 불분명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미군기지의 반환이 예정되어있는 경기도의 미군공여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용산기지 등 반환·이전 대상인 62곳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과 관련해 그 치유(정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쪽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그 부담액은 최대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는 그간 한국정부가 반환기지의 오염은 미측이, 신규 공여기지의 오염은 한국측이 지위협정 및 관련합의에 따라 치유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혀온 사실을 뒤집는 상황이다.
- 가장 많은 미군기지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부의 대응만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경기도내 '미군기지문제 전담부서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실과 유사한'의 설치는 진행되지 않고 '미군기지이전지원단'만이 설치되어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 사회문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OFA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대응 권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3. 세부공약

-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100% 원상회복 후 반환받으며,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와 개선책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 SOFA에 의한 환경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에 경기도의 참여를 실현한다.

정책공약안 4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하천생태계 조성
-------------------	------------------------------

1. 제안배경

- 국내 하천사업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들어 방재하천은 하천의 친수기능을 위해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후 친수성은 증가하였으나, 생태 서식처로서의 보전·복원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청계천 사업 또한 사실상 인위적인 유량확보를 통한 공원하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근래 들어 건교부와 경기도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하천복원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생태복원과 거리가 먼 일종의 공원하천 조성계획에 가까운 것이 실정이다.
-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궁극적인 하천복원의 대상은 하천 생태계의 복원이다. 따라서 하천복원사업도 목적도 하천의 공원이화가 아닌 자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중장기적인 하천복원 및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하천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서식처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자정은 따라서 회복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자연형하천 복원과정에서 지나친 공원위주 계획으로 과도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등으로 나누어진 하천의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한채 자연형하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도 자연형하천 복원에 있어 일관된 원칙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3. 세부공약

- 방재중심 또는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물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보·댐 등의 철거
- 농촌과 도시의 비점오염원 하천유입을 막아 하천수질오염 방지
- 댐과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 건설을 통한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 자연형하천 복원 원칙에 충실한 자연형하천 복원 지침을 재정하여 예산지원과 연계한다.

정책공약안 5	녹색구매 조례 재정
-------------------	-------------------

1. 제안배경

- 녹색구매의 확산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시장을 형성,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거대 소비자로서 지방정부는 녹색구매를 실천하고 기업의 녹색생산성과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주체이다.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친환경 생산·소비를 위해 녹색구매방침을 수립하고 산업계·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녹색소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제주도 등)에서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녹색구매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3. 세부공약

- 친환경상품 구매·사용을 위한 녹색구매 조례제정
 물품구매계약서, 각종 공사계약서 등에 녹색구매 근거 규정 반영
- 매년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전담부서 지정.운영
 . 친환경상품 생산시설과 유통판매 운영자금 지원확대
- 대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의 지역확산을 위한 대기업○중소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 시민들의 녹색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실시

정책공약안 6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 에너지자립도 10% 달성
-------------------	---

1. 제안배경

-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고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감축이행 당사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도증가와 에너지고갈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음. 한국의 평균기온 1.5℃ 상승, 해수면 수위 상승 등과 태풍, 폭우,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음
- 2005년부터 국가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구성되어 대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에너지 및 기후변화의 전세계적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노력 필요.
-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치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
- 중앙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등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분주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함.
- 에너지 사용절감으로 기후환경보호 및 지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지역의 경우, 에너지사용량이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에너지사용량도 매년 3.7%씩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음. 군포지역 역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타지역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을 대비하는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본격화해야 함.
- 에너지와 관련한 수도권의 특성은 생산없이 소비만 한다는 점임. 전력에너지 역시 1차에너지를 비수도권에서 거의 생산하고 있으며, 군포의 경우 소각장에서의 열에너지 일부 생산이 거의 전부임. 1차에너지 뿐만 아니라, 2차 전기에너지 역시 전량을 수입, 외부에 의존하는 상태임.
- 에너지 외부의존도 100% 지역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노력은 태부족 상태임.

3. 세부공약

-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목표 10%
-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CES) 확대로 경기도 에너지자립도 10%를 달성한다.
- 각 부문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와 에너지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행정부서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효율화 지원을 위한 부서 신설.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민참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공약안 7	자원순환이 가능한 경기도 폐기물 정책 수립
-------------------	--------------------------------

1. 제안배경

-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선 폐기물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일이며 일단 발생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화하고도 남은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방법에 의해 적정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폐기물은 위생매립 등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우선순위는 환경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나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발생량감소 및 재활용분야는 우선순위가 낮은 처리 및 처분 분야에 비하여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매립이나 소각 등에 의해 영구히 재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어 왔다.
- 최근의 폐기물문제에 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은 자원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가동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전 단계에서의 재활용물질 회수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발생이후에는 재활용물질 회수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발생된 폐기물내에도 재활용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자원재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전 처리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문제점 및 현황

○ 경기도 폐기물 발생량

구 분	' 97	' 98	' 99	2000	2001	2002	
발생량(톤/일)	8,162.8	7,819.2	8,080.5	8,049.9	8,742.9	9,069.0	
1인당 발생량 (kg/일·인)	1.00	0.90	0.90	0.87	0.91	0.91	
처리율(%)	매 립	54.2	43.2	35.9	29.4	26.6	22.6
	소 각	11.8	15.3	20.4	25.4	29.1	30.0
	재활용	34.0	41.5	43.7	45.2	44.3	47.4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경기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11개소, 소각시설 12개소, 재활용 및 선별 시설 38

개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6개소가 운영중이나 향후 건설될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시설의 설치를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는 1995년부터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와 경제성, 효율성 제고의 필요에 따라 1998년부터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군별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조정하여 경기도 20개 시·군 7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파주시, 이천시는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광역처리하고 있거나 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향후 경기도의 북부권역과 화성시, 오산시와의 광역화를 추진중에 있으나 입지 선정 및 광역화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세부공약

-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각 지역별 폐기물 관리 방식과 체계를 점검하고 경기도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폐기물관리 구상을 만들어야 한다.
소각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전 처리시설인 MBT(Mechanical-Biological Treatment)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또는 광역적 시설 설치를 시도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생활폐기물 전처리설비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매립과 소각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설비에 대한 국내보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활용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처리기술이 연계되는 기술개발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PR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용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처리기술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향상된 재활용기술과 전처리기술이 연계되는 설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통합적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전과정평가법(Life Cycle Assessment, LCA)의 도입 등을 통한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의 극대화, 안전한 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폐기물관리(Integrated Solid Waste-Management)가 필요하며 처리에 있어서도 가능한 폐기물의 처리가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공약안 8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	---

1. 제안 배경

○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농촌 자체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농촌 및 농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

○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사업으로 1999년부터 작물양분 및 병해충종합관리기술 보급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여주,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장은 주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의 61.5%인 318개의 매장이 서울 및 수도권에 개설되어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문판매장의 경우 전체 매장 가운데 86.7%인 85개소가 서울 및 수도권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분포현황(2003년)

구분	계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소비자단체	전문판매장
계	517	109	110	133	67	98
서울 및 수도권	318	63	60	65	45	85
지방대도시	119	28	35	35	19	9
지방중소도시	80	18	33	33	3	4

*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2003.8)

2. 현황

○ 2004년 경기도 농가수는 142천호로 70년대에 비해 56%줄었으며, 전국 농가수 1,240천호의 11.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총 가구 15,539천호의 1.0%이다.

농가인구는 476천명으로 70년 대비 33%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전체인구 10,463천명의 4.5%이고 전국농가인구 3,415천명의 13.9%이다.

<표 2> 경기도 농가 및 농가인구

구분	농가	농가인구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
1970	254,229	1,459,152	5.7
1980	235,335	1,192,419	5.1
1990	202,595	825,807	4.1
2000	148,504	514,058	3.5
2004	142,391	476,101	3.3

○ 총 경지면적은 200,550ha로 2000년 대비 10,645ha가 줄어 매년 평균 2,661ha가 감소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41ha로 전국 1.48ha보다 적다. 경지면적중 논 면적은 59%이고 밭면적은 41%이다. 경지면적 감소사유는 수도권개발수요 증가로 매년 1,740ha의 농지가 건물건축, 공공시설, 주거시설, 농업용시설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표 3> 경기도 경지면적

구분	경지면적(ha)			가구당 경지면적(ha)		
	합계	논	밭	합계	논	밭
2000	211,195	127,915	83,280	1.42	0.86	0.56
2004	200,550	118,831	81,710	1.40	0.83	0.57

○ 2004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018ha로 2003년 재배면적 5,803ha 대비 38%인 2,215ha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량은 112,881톤으로 2003년 90,517톤 대비 25%인 22,364톤 증가하였다.

<표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형별 재배현황

구분	계	쌀	기타작물							
			소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2004	농가수	7,692	5,409	2,283	26	1,192	915	26	94	30
	면적	8,018	5,594	2,423	17	1,208	1,003	22	23	148
	생산량	112,881	26,261	86,620	67	22,983	53,077	421	5,979	4,093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

<표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2004)

구분	계(톤)	계약재배	직거래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점	일반시장	생협	기타
계	112,881	22,803	25,235	27,819	3,613	7,511	6,115	2,224	17,563

3. 세부공약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첫째,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접근성이 용이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상 유기농업이 친환경 농업의 전체로 인식되어 있는데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 등이 함께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지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하나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실태를 볼 때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의 경우 대 규모 유통매장의 활용 방도가 필요하다.

둘째, 생산자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향후 농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농업인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판로의 문제(가격), 생산기술 및 자재의 문제(노동력), 소득의 문제(생산량)를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도가 마련되어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확대될 것이다.

○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한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다품목 소량으로 운송되고, 한 생산자가 복수의 유통조직과 거래하고 있으며 아직 생산자가 소비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분산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적정가격을 형성시키는 친환경 농산물판매를 위한 전문매장과 이를 활용한 전문식당가등 친환경농산물 전문 물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9	수도권 신규 국도,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	--

1. 제안배경

- 지속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분산, 적정인구 유지,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총체적 수도권 비전을 가져야 함.
- 이를 위해 수도권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 요인이 되는 도시 계획,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등이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에 복무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계획되고 있는 신규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수도권지역 난개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들 도로의 건설이 또 다른 난개발의 시작이라는 점이 문제임.
- 난개발로 인한 인구의 무계획적 유입은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이들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불모로 도로공사가 계획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예측교통량은 부풀려지고, 이 부풀려진 교통량으로 인해, 남은 교통량에 근거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2006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9,193억원 중 32.3%에 해당하는 2,966억원이 도로계획에 배정되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사용되어질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유치형식의 도로건설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도로건설이 예측됨. 도로건설은 해당지역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집중가속의 요인이 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함께 유발하게 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교통부문, 도로부문에서의 수도권관리 및 밀집억제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정치에서의 화두 및 의제가 되어야 함.

3. 세부공약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도로계획에서 예상수요의 기본근거는 인구임. 현 수도권 각 지자체의 2020년 계획인구는 현재보다 750만 증가된 숫자임.
- 수도권의 올바른 관리와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지속가능한 수도권 및 수도권 관리 관점에서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수도권의 인구분산, 집중억제, 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전제로 수요추산을 해야 함
허과기능을 담당하는 녹지 및 자연생태계의 보존, 신규도로로 인한 개발연담화 방지

- 수요관리형 수도권 광역도로망 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선에서 도로수요
예측 및 도로망을 계획해야 함.

정책공약안 10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	--------------------------------------

1. 제안배경

-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 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의 증대를 통해 대량 집중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만 교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경영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도로혼잡 등의 운행 악조건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도시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 도로교통의 운영에서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시내버스 준공여제의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환승센터의 확대설치, 정류장 시설개선, 버스 이용정보 안내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버스교통의 여객수송량은 98년 대비 2003년 81%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 감소세에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97년 27.1%였던 버스수송분담율이 2년후인 99년 26.2%로 줄어들었으며, 도시철도 역시 5.9%에서 5.7%로 줄어들었음. 기존 전폭적인 도로계정 중심이었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일부 대중교통계정으로 투자를 늘렸음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승용차 분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과 거의 중복되는 버스노선의 비율이 많으며, 버스노선의 중복도가 높은 구간은 수익노선 구간이며, 노선의 중복도가 매우 높아, 심지어 일부지역은 버스노선 중 주수익노선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이 50%를 넘는 곳도 있음.
- 반면, 비수익노선은 배차간격이 넓어지고, 운행정시성도 떨어져 노선폐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다중복노선은 노선밀집으로 인한 버스이용불편과 정체 등이 상시화되어 있음.
- 지역내 교통에서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이동편의성과 소요시간 등에서 월등히 앞서는 지역이 많으며, 이는 대중교통 선택 시민들이 점차 승용차 이용으로 돌아서고 있음이 관련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음

3. 세부공약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기타 버스 우선 통행시설, 신호, 운영제도 도입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 버스노선 조정 및 운영을 위한 민관위원회 설치

정책공약안 1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내 7천4백여 개 보육시설의 21만 5천여명의 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8.65% 수준으로 전체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3.52% 수준이다.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합해도 4.91%, 이용 아동기준 12.3%가 이용하고 있을 뿐 보육사업은 민간시설 위주로 확충되고 있다.
-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중 56·57%가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고, 그 이유로 비용이 저렴해서가 54.1%로 가장 높고, 신뢰하기 때문이 43.1%로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민간시설보다 높아 국공립보육시설은 정원대비 72.7% 대기아동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미취학 아동의 부모 41.3%가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간연장형 전체 보육시설의 4%에 불과하다. 미취학 아동 부모의 63.4%가 시간제 보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 비율은 2.7%로 추정되나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이용아동은 0.7%에 불과하다.
-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수준은 79만원 이하가 25.7%, 80~100만원이 27.7%, 100~119만원이 22.7%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1년 미만인 경우도 32.2%에 이르는 등 장기근속 보육교사의 비율이 낮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아동과 보육교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한 보육의 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 세부공약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한다는 조항을 조례화해야 한다.
- 영아·시간연장형·장애아 통합보육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초과근무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아동들의 방학기간동안의 급식을 지원해야한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수준까지 차등보육료 적용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2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혼률 증가, 근로빈곤층 증가, 지역공동체 붕괴 등으로 인해 여성과 마을공동체가 담당하던 '돌봄노동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10% 이상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로 '학력의 대물림·빈곤의 대물림'이 확산되고 있다.
-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여성부, 2004. 9 ~ 2005. 2)에 따르면,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6%이고, 전체 아동 중 31.0%가 방과후 수요가 있는 아동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방과후 보호 교육 대상 아동 추계 결과는 약 158만 명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없거나(74.3%), 취업모인 경우(65.1%)에 방과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미취업모인 경우에도 과반수가 넘는(52.5%) 여성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세부공약

-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령기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3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여성장애인들에게 산재 되어있는 중첩된 차별문제와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삶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욕구파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단편적인 복지서비스제공과 일시적인 정책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담영역에 있어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피해자 지원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동료상담 등 인권침해방지 및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전국 7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경기에는 단 1곳이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타지역에 연계해야하는 실정이다.
- 여성 장애인의 가정폭력의 경우, 적절한 상담과 치료지원이 절실하나 상담시설과 보호시설이 전무하여 여성 장애인의 가정폭력이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형편이다.

3. 세부공약

- 여성 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
- 경기도에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적용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지역 여성 장애인 실태 조사와 기초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p>정책공약안 14</p>	<p>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p>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03. 6)하고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 대책을 수립·발표('04. 3. 31)하여 2007년까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법이 시행 이후 성매매방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특히 경기도는 미아리 천호동등 서울지역의 성매매업소의 단속으로 이지역 성매매 업소들이 서울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는 계속 확대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미군부대 주변의 기지촌부터 기업형 성매매 업소까지 모든 성매매유형이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 1,071개의 성매매 집결지중 경기지역이 245개소로 서울다음으로 성매매 업소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세부공약

- 경기도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폐쇄하고,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 대책과 예산확보, 사회자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5	성폭력·가정 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신고율이 6%에 불과하여 실제 성폭력발생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예방정책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관련 상담소와 쉼터는 증가했지만 성폭력·가정 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은 줄지 않고 있다. 성폭력·가정 폭력 및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자활에 이르는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위기 시 지원체계, 홍보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현재, 성폭력·가정 폭력 및 성매매 피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총괄 논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세부공약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자치단체와 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도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예방(교육 포함)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지역 내 연계망의 업무를 위한 지침 수립, 피해자 공동지원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6	한부모·국제결혼·조손·비혈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을 확대 강화 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1세대 가구는 16.8%(1985)에서 33.5%로(2003) 증가하였고, 2세대·3세대 이상 가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15.1%(1985)에 달하던 3세대 이상 가구는 8.7%로 줄어들었다.
- 현재 한부모 가족의 경우 65.5%가 1명 이상의 20세미만 자녀가 있고, 국제결혼가족은 56%이상(2005년 보건복지부 자료)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분포되어있고 , 비혈연 가족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과 함께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빈곤화되고 있으며, 장애 인가족처럼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형태보다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증진, 가족갈등 해소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경향은 이혼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측면은 강한 반면, 이혼결정을 하거나 이미 이혼을 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 세부공약

-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 국제결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경제·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가족유형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구성원의 요구에 기반한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의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7	빈곤 여성과 여성노인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

1. 제안배경 및 현황

- 여성가구주는 1980년 1,168,538가구에서 2000년 2,653,010가구로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기도 역시 1980년 140,771명에서 2000년 390,970명으로 여성가구주들이 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로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가구주 3명중 1명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석재은, 2004).
- 2005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진행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근로빈곤여성가구주들의 50%이상이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하루에 2,3 시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학 아동의경우는 혼자두는 비율이 높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써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사노동과 육아등 가정생활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각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여성의 비율은 78.1~82.8%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지만 역으로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임금과 낮은 종사상 지위, 고용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질 높은 고용의 가능성이 낮은 여성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직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대다수의 참가자인 여성들의 소득향상과 복리향상, 직업개발을 통한 고용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되기에는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
- 현재 빈곤 여성 취업훈련 부가 급여는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1인당 5만원(3인 한도), 가계보조 15만원(여성가장 제외 전 가족이 부양가족인 경우) 등 최대 40만원에 불과하여 소득이 없는 여성가장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2. 세부공약

- 빈곤 여성과 여성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 빈곤 여성의 돌봄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학령기 아동 보호 및 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파출·간병인 등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의 도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빈곤 여성의 직업훈련 기간 급여를 현실화 하고, 빈곤 여성들의 학력, 연령, 기능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8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확대 등 성인지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

1. 제안 배경 및 현황

- 최근 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성예산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2006년 여성관련 예산은 316억으로 전체 예산의 3.69%이나 예산의 90% 이상이 보육, 청소년정책 예산에 치우쳐 있다. 여성정책을 집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정책예산과 여성의 사회참여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
 한편 2005년 4월 현재 경기도의 여성공무원수는 335명으로 전체 의 17.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3명으로 같은 급 남성공무원의 5%에 불과하다.
- 여성가족부는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3~’07)에도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에 시범적으로 5개사업별 성별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각 사업소별, 산하기관별, 각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각 영역별 성평등한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

2. 세부공약

- 여성정책의 집행력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책예산, 여성의사회참여예산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지사중 1인을 여성으로 임명해야한다.
- 경기도에서는 각부서별,산하기관별,사업소별 성별영향평가 확대실시, 성별분리통계 확대, 여성책임담당관제실시 등 성인지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

정책공약안 19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학교용지 확보
-------------	--------------------------------------

1. 제안배경

1) 2020년까지 경기도 인구 지속적 증가

- 최소 1346만명에서 최대 1675만 명으로 증가
- 당연히 학교 신설 수요가 폭증 예상됨

2020 경기 인구 추정 통계

통계청 인구 통계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인구	시군 예상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시·군도시기본계획인구
1346만명	○ 최소: 1415 만명 ○ 최대: 1478 만명	○ 최소: 1665만명 ○ 최대: 1675만명

2) 학교신설에 필요한 자원 감소

-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함.
- 학교 설립 수요량 누증되고 있음.
- 서울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0(강북)○34(강남),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40(읍면)○43(시지역)

학교신설비 부족현황

[단위 : 교, 억원]

구분	학교수	총소요액	집행액	부족액 (향후소요액)	비고
‘01 ~ ’05신설	534	71,310	58,662	12,648	‘05. 12월말 기준

2. 현황 및 문제점

1)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별첨 1 참조)

별첨1)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 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6조 1항

『법 제6조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

- 감사원은 경기도가 토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경기도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 8,1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2) 경기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음.

- ① 2001년 3월 이전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못해서, 법이 집행되지 못한 시기의 부담금은 처리문제
- ② 경기도청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중 건축법에 의해 승인된 개별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일과 분양공고일을 경기도조례제정일(‘01.3.5) 기준으로 파악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의 학교용지에 대하여만 매입비용의 1/2을 지원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시행일(‘96.1.29)이후 주택건설촉진법, 택지

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발하는 사업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의 부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재원 954억 원에 대해서 경기도청은 “교육인적 자원부가 환급 지침을 내려 학교용지 매입비를 환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위헌결정 여파로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및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 6조 1항을 근거로 환급 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④ 지원방식에서 경기도는 2003년 합의에 따라 ‘선매입 후지원’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실제 매입년도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매입비를 먼저 전입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하여 2001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4,535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청의 주장은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과 3,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중 경기도 부담금 년도별 미납액 > _

< 단위: 백만원 >

차수	산정기간	전 입 실 적					
		매입현황		경기도 부담소요	경기도 실제전입	경기도 미전입액	전입연도
		학교 수	매입액				
1	1996.1.29 ~ 2001.3.4	35	183,346	91,673	○	91,673	
	소 계	35	183,346	91,673	○	91,673	
2	2001.3.5 ~ 2001.12.31	38	276,847	138,423	70,509	67,914	2002년
3	2002.1.01 ~ 2002.7.31	22	154,055	77,028	62,300	14,728	2003년
4	2002.8.01 ~ 2003.7.31	61	470,676	235,338	91,111	144,227	2004년
5	2003.8.01 ~ 2004.8.31	36	227,953	113,977	○	113,977	
6	2004.9.01 ~ 2005.8.31	47	419,673	209,836	○	209,836	2006년 회계 전입예정 통보
7	2005.9.01 ~ 2005.12.31	33	339,370	169,685	○	169,685	
	소 계	237	1,888,574	944,287	223,920	720,367	
	계	272	2,071,920	1,035,960	223,920	812,040	

3. 세부공약

-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개발지구내 취득세, 등록세 세입 실적 공개한다.

정책공약안 20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및 자체사업 바르게 쓰기
-------------	-------------------------------------

1. 제안배경

- 연간 1000○1500억원 정도의 비법정 전입금(교육협력 사업, 영어마을, 특목고 설치,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
-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일부(농어촌 ·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가 효율성과 공공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 자체사업(영어마을, 특목고, 외국인 학교 지원) 중 영어마을은 그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목고, 외국인 학교 지원은 경제력이 있고 발언권이 높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 증진과 공교육 전체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긍정적 측면

- 16개시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비법정 전입금 지원
- 비법정 전입금으로 교육복지 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실업교육 활성화 지원, 특수 교육지원 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 현황

- 경기도는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지원
- 2003년 시행당시 보다 투자 규모는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계획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도교육청 비법정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61,719	39,299	31,530	44,474

* 문제점

- 영어마을의 경우 5박 6일 수업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 영어 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영어 마을이 외국 유학 효과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 영어 마을 때문에 외국 유학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
- 학생들이 5박 6일 정도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40만원선. 개인은 8만원만 부담. 과도한 운영비가 들어감. 앞으로 파주와 양평에 추가적으로 더 영어마을이 설립될 경우 운영비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됨
- 숙박을 통한 영어마을 운영보다는 개별학교에서 영어 활용 경험을 늘리는 프로그램 지원 및 각 시에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생산적

- 특목고 운영은 평준화 체제의 보완책으로 특정한 분야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 필요함.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 특목고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교육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은 입시위주 교육만 가중시킴
- 과학고의 경우 영재 교육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학기 만에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시교육에 치중.
- 1인당 공교육비에서 일반계고 학생의 10배 이상을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아니라 영재교육의 목표에 동의한 것임.

- 수원 외국인 학교의 경우 300명의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2만평 부지 제공. 국내 학생들은 1인당 4평의 공간 사용. 경기도는 제 2 수원 외국인 학교 설립도 계획중
- 수원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뿐만아니라 입학 정원의 25%의 범위 내에서 내국인 입학도 허용하겠다고 함.
- 현재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은 일정부분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내국인 입학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 국내 외국인학교의 등록금은 약 2000여 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면 국내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귀족학교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

3. 세부공약

- 법정 전입금을 우선 지급하고 교육협력 사업과 교육관련 자체사업을 시행한다.
- 교육협력 사업과 교육관련 자체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한다.
- 시행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정책공약안 21	경기도민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 20% 확보
---------------------------	---

1. 제안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양극화, 신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 등 은 여전히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민의 복지욕구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지예산은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충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주민의 삶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데서 더욱 중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은 반면, 사회보장비의 비율과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용이 전국 9개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나,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이 10% 내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005년 1회 추경예산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51.1%, 자체사업예산은 48.9%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5년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비(도비) 부담액도 삭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수준은 더욱 열악해졌다.

< 광역자치단체(道) 사회보장비 비교 >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사회보장비율 (%)	2003년	14.1	15.0	9.8	13.3	16.6	17.8	20.0	12.7	16.6	16.4
	2004년	14.3	14.6	10.0	12.7	17.0	17.6	21.7	12.7	16.8	17.5
	2005년	14.6	11.3	11.8	14.6	15.4	17.3	20.8	14.1	16.0	16.5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 (천원)	2003년	137	137	64	106	120	186	167	174	149	130
	2004년	151	147	72	103	138	200	190	195	165	147
	2005년	163	141	80	137	135	224	215	224	168	146

주: 당초예산 기준

자료: 9개 광역자치단체(道)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 사회복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사회보장예산(%)	78.6	21.4	90.3	9.7	89.0	11.0	89.2	10.8	87.2	12.8	85.5	14.5

주: 사회보장예산은 사회보장비 외에 보건의료 및 정신장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보건관리예산도 포함된 것임

자료: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서(최종)

< 지방이양사업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확보 현황 >

단위: 천원

년 도	2004년			2005년			삭감액		
구 분	계	국비	도비	계	분권교부세	도비	계	국비	도비
예 산	69,120,371	50,006,457	19,113,914	60,602,103	46,205,033	14,397,070	8,518,268	3,801,424	4,713,844

주: 각각의 예산액은 지방이양사업 중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57개 사업의 예산을 합한 것임.

자료: 경기도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2005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재편성

3. 세부공약

경기도 복지예산 비율을 일반회계 대비 최소 20% 확보 및 예산계획 수립

정책공약안 22	지역차원의 통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	---

1. 제안배경

- 첫째로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행정체계 구축의 기본은 '수요자 중심 조직체계 구축'이며 첫째 과제는 보건, 복지, 고용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및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중앙-지방 사회복지조직의 구축이 요구된다.
 급격한 복지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확대 개편되는 복지서비스 기능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고용과 연계된 생산적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 둘째, 지역사회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통합적 사회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통합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통합적 사회정책이 실현 되는 실천의 장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분야 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서비스가 공급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주민들은 필요한 소득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기관이나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급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 지방분권정책을 통한 생산영역의 혁신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던 정책방향이 지역의 복지화를 통한 소비영역 즉, 주민의 일상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이동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 지역서비스혁신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 실현에 있다.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주민서비스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한 지방정부예산 참여와 평가 그리고 감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지역서비스혁신체계의 핵심이다.
-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와 실질적인 참여기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서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지방화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조정 에 한정되어 있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고용과 교육, 문화, 생활체육, 육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취약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집중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축소되어 국가의 사회복지행정의 확대 개편이 요구되나, 부분적인 개편에 그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복지수요의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복지, 보건의 물론 고용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수적이 나, 이 또한 분산된 행정체계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이 정보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3. 세부공약

-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조직을 사회정책본부(사회정책실 혹은 주민서비스지원실) 조직으로 확대 재편하여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복지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구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함.(기초 지자체는 사회정책국(주민서비스지원국)을 신설하여 경기도 사회정책본부와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함)

정책공약안 23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시설정책의 방향 전환
--------------------	---

1. 제안배경

- 경기도 내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약 500여 개소의 복지시설과 1만 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시설, 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관리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체계적 인력 운영방안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시설은 지역주민의 보다 가까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활시설의 경우는 생활인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수많은 시설, 기관들이 사업 분야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민간 자원간의 연계도 제대로 안되고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용시설의 경우 대규모 위주로 신축되어지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 복지예산 투입의 적절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시설의 경우도 대형 시설 내에서 의료, 직업, 생활 등 모든 것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세부공약

- 시설정책의 방향 전환(대규모시설→소규모시설, 생활시설→재가복지시설)과 구체적 계획 수립
-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복지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분야별·단계별 보수교육 의무화제도
- 사회복지 분야별, 기관유형별 운영예산의 합리적 기준 마련(표준운영비 산출 근거한 운영비 지원, 항목별 예산 지원, 종합적 표준급여체계 마련)

정책공약안 24	31개 시군에 학교사회사업실 확대 및 학교사회복지사 1인 배치
--------------------	---

1. 제안배경

-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으로써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사회로 확대되어 가기 전에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교사에게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의 책임을 모두 맡길 수 없다. 또한, 학교 병리현상의 심화, 열악한 학생 인권 수준 등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1차적으로 교육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학교 내에서 2차적으로 실시되는 보완적인 기능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와 학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복지, 그리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다루어주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과거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나타났던 학교 중도 포기 현상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에 대한 무관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 가출,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교육병리 현상들이 이미 과거 생활지도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잠정적으로 인권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점에 의해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대화 중심의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와 동원기술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3. 세부공약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실 연구학교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시군별 조정 필요)

정책공약안 25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	--

1. 제안배경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의 주체적인 생활권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도 다양한 욕구에 기존 장애인복지 서비스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탈피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2005년 12월말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342,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35%에 해당되는 120,000여 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 54,000여 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도움제공자가 없거나, 비정기적인 자원봉사자 또는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도움제공자가 없는 현실은 중증장애인이 교육과 노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외출조차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지 실태파악조차 안되는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무하다. 자립생활지원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경기도는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아,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세부공약

-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과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 최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자립생활센터 설치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즉시 활동보조인 파견

정책공약안 26	무료, 실비 노인요양시설 156개소 확대, 시니어클럽 6개소 확대
-------------	---

1. 제안배경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781,900명이고 이 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115,95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현재 55세 정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생각할 때 25년간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55세부터 80세(2006년 평균수명 77세)까지 25년간의 퇴직이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득보장은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보건복지부 발표 경기도의 노인생활시설은 총 78개소에 4,50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그나마 확대 추세이고,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노인의 8.3%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단기 보호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니어클럽은 사회적 유용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을 지닌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는 부천과 시흥에만 운영되고 있다.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요 >

구분			2005	2006	2009	2010
노인 요양 시설	합계	개소	78	125	256	305
		명	4,477	6,250	12,800	15,250
	공공 (무료,실비)	개소	40	64	131	156
		명	2,429	3,200	6,550	7,800
	민간(유료)	개소	38	61	125	149
		명	2,048	3,050	6,250	7,450
경기도 시설수요			14,199	15,638	18,323	19,087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수			709,953	781,900	916,160	954,399
시설충족률(%)			31.5	39.9	69.8	79.8

(주 경기도 65세 이상의 2%가 입소대상자로 추정, 시설 1개소 당 50명상으로 가정)

3. 세부공약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156개소 확대
-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최소 100개소 확대
- 시니어 클럽 50만 이상 대도시 6개소 신규 설치
- 노인전문병원을 최소 인구 50만 명 당 1개소씩 설치, 노인보건센터 및 시범 노인보건복지타운 건립

1. 제안배경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또한, 고령사회의 진전 및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로 욕구 및 문제의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지역의 경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대책이 상당히 취약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인생의 출발점인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둘째, 도시 보건소의 경우 관할 인구의 과다, 방문간호사의 부족으로 영세민,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에 큰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셋째, 장애인 치과치료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치료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진료가 어려워 민간 진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정신장애인 전용의 정신보건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의 경우도 급성기질환 치료기관인 병원과 가정의 중간시설로서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가정에서 돌보기는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다.

3. 세부공약

- 임산부 무료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무료 기본 예방접종, 영유아 무료 건강진단
- 보건소 당 방문보건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재활보건센터, 장애인치과 진료실 설치
- 생활습관병 환자 등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병관리센터 설치 및 지역건강증진센터 설치

정책공약안 28	경기지역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한다.(3개)
--------------------	---

1. 제안배경

- 신문과 방송 등 매체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언론 환경에서 시민이 영상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일상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영상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사진과 영상에서 스스로 만들어 의사소통을 하고 시민이 직접 사진, 영상을 제작해 나가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으로 시민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는 방법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기획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코자 한다.

2. 현황

- 지난 2004년 12월 경인방송이 정파된 이후 경기, 인천 지역의 방송이 전무한 상태로 시청자들의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인구 1,300만이 넘는 시청자와 400여 시민단체는 건강한 지역방송 설립을 요구하였고, 4월 28일 새로운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 새로운 예비사업자 2개의 컨소시엄 모두 경기지역 3개의 도시에 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 함께 만드는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5년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는 전국 5개 도시에 미디어센터 설립을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였다. 지원 금액은 한 곳에 10억 원 정도이다. 단 지원원칙에 지자체에서 50%정도의 부담금이 있어야 한다.

3. 세부공약

- 경기지역 시청자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3곳)를 설립한다.
- 시민단체는 방송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한다.
- 경기도 및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한다.
-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는 건물 및 시민 교육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송장비 일부를 부담한다.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미디어센터에 들어 갈 장비를 부담한다.

정책공약안 29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도청 내 통일관련 부서 신설
--------------------	--

1. 제안배경

- 21세기를 맞아 우리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딛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정부당국의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과 분단의 심리적 벽을 허무는 교류왕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극복해 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되고 있다.
- 남북의 인적왕래가 서울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탈피하여 현재보다 더욱더 많은 도민들이 북을 방문하고 북에서도 서울만이 아닌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회, 문화, 인적교류의 확산은 대결적이고 상대적인 대북관계 및 대북인식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을 높이게 될 것이며 긴장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이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차원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확대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경기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현황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 등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간 신뢰회복 및 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3. 세부공약안

- 경기도청 내 통일관련 부서 신설
- 615공동선언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데 있어 경기도청의 주관 부서가 되며 민간단체들의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있는 경기도내의 통일행사에 대한 제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
선거



좋은정책 경기연대